

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정헌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우체국보험도 우체국예금과 함께 우편사업특별회계의 결손을 일부 보전할 수 있도록 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서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전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(안 제3조제2항제5호 및 제8조제2항 단서 신설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 혜 진)